

# 이사회 운영 규정

소관부서	이사회지원부서
제 정	2009.06.30
1차개정	2016.05.11
2차개정	2022.08.09
3차개정	2023.03.24

**제1조 [목 적]** 이 규정은 주식회사 씨젠 (이하 "회사" 라 한다) 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[적용범위]**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 [권 한]**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4조 [의 무]** 이사는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경영정보를 이사회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 [이사회 구성]** 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과 감사로 구성한다.

## 제5-1조 [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]

1.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2.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
  - ②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3.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.

## 제6조 [이사회 의장]

1.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이사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.
2. 이사회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,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3. 의장은 이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
**제7조 [소집권자]**

1.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

**제7-1조 [회 의]**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2.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.
3.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**제8조 [소집절차]**

1.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,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. 단, 통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.
2.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3.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**제9조 [결의방법]**

1.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고, 가부 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2.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,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3. 이사회 규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4.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**제10조 [부의사항]**

1.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①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 사항
    - 1)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2) 영업보고서 승인
    - 3) 재무제표의 승인
    - 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  - 5) 공동대표의 결정

- 6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 - 7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  - 8) 신주발행사항의 결정, 실권주, 단수주 처리
  - 9)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
  - 10) 사채의 모집, 발행
  - 11)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
  - 12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
  - 13)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
  - 14) 준비금의 자본전입
  - 15)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  - 16) 이사의 경업 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
  - 17) 간이합병, 소규모합병의 결정
  - 18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취소
  - 19) 중간배당의 결정
- ②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.
- 1) 영업의 전부, 중요한 일부의 양도
  - 2) 영업의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, 변경 또는 해약
  - 3)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일부의 양수
  - 4) 주식배당
  - 5) 자본감소
  - 6) 배당가능이익 범위내 주식소각
  - 7)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통한 완전모회사, 완전자회사 설립
  - 8) 정관의 변경
  - 9) 이사 보수안
  - 10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 - 11)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
  - 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  - 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 - 14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
- ③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
- 1) 자기자본 10%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 지분 처분
  - 2)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(이행보증 및 납세보증 제외)
  - 3)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채무인수 및 면제
  - 4) 자기자본 10%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또는 시설증설
  - 5) 자기자본 10% 이상의 차입

- 6)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%이상인 자산의 양수, 양도
- 7) 자산총액의 10%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
- 8) 자산재평가
- 9) 자기주식의 처분 및 취득
- 10) 공개매수

④ 기타

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그 권한을 대표이사 및 상근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- ②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3.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대표이사 및 상근이사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-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- ③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**제11조 [감사의 출석]**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12조 [관계인의 출석]**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3조 [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]**

1.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2.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3. 사외이사가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**제14조 [의사록]**

1.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3.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4.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.

#### 제15조 [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]

1. 회사가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경우 이사회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2.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과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의 전원 참석, 전원 동의 시 승인할 수 있다.

#### 제16조 [지원조직]

1. 이사회를 원활한 운영과 결의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, 기타 이사회를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이사회를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.
2. 지원조직은 이사회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건발의부서에 이사회 출석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# [부 칙]

-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
이 규정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 
이 규정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  
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